

심사결과보고

의안 번호	의안명	심사결과	비고
4579	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(신규위탁) 동의안	원안가결	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
경제복지위원회

의안 번호	4579
----------	------

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(신규위탁)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

경 제 복 지 위 원 회

심 사 보 고 서

2026. 7. 27.

경제복지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년 7월 9일, 대전광역시 서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: 2026년 7월 9일, 의장으로부터 회부
- 다. 상정 및 심사 일자: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
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상정 및 심사.의결 (2026.7.21.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2026년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대상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을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기존 설치·운영자에게 최초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- 이에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, 「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」 제16조 및 제17조, 「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위탁대상	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	별그림어린이집	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
위탁기간	2026. 11. 1. ~ 2031. 10. 31.(5년)		
위탁업무	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		
위탁근거	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2호		
위탁체	장혜진	홍도현	오은하
현원/정원	19명/20명	13명/20명	18명/20명
교직원	9명 (원장 1, 보육교사 7, 조리원 1)	5명 (원장 1, 보육교사 3, 조리원 1)	8명 (원장 1, 보육교사 6, 조리원 1)
운영비	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	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: 류옥화)

- 본 동의안은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장기임차 전환으로 최종 선정되었기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.
-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연두아이누리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 위탁 및 건물 무상사용 계약 체결, 전세권 설정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.
- 관계법령인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, 「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 검토 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답변 요지: 생 략

5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6. 소 수 의 견: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 음

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(신규위탁) 동의안

의안 번호	457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: 2026. 7. 9.

제출자: 대전광역시 서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6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(가정)이 교육부로부터 최종 선정
- 나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최초 위탁의 경우 기존 설치·운영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.
- 다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, 「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」 제16조 및 제17조, 「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: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
- 나. 추진근거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
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 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 - 「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」 제16조(공립어린이집의 설치) 및 제17조(운영관리)
 - 「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) 및 제6조(의회동의)
- 다. 추진 필요성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위탁의 경우 기존 설치·운영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.
 -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민간위탁이 필요함.
- 라. 위탁사무의 내용: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
- 마. 위탁시설의 개요

어린이집 명칭	위탁체	소재지		원장	시설규모 (면적)	정원 (현원)	개원 예정일
		행정동					
연두아이누리 어린이집	오은하 (개인)	용문동	서구 계룡로636번길 18, 102동 103호 (용문동, 리베라이아이누리아파트)	오은하	지상1층 (84.9㎡)	18명 (20명)	2026. 11월

바. 위탁기간: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/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 2

사.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

-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해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 제9항, 「교육부 고시」 제2024-13호 “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”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사전적격 및 서구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의 후 대전광역시 및 교육부 최종심의·선정

아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: 별첨 민간위탁 추진계획 참조

자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: 별첨 민간위탁 추진계획 참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- 「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」 제16조(공립어린이집의 설치) 및 제17조(운영관리)
- 「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) 및 제6조(의회동의)

나.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: 별첨

등록번호	아동복지과 -31920
등록일자	2026. 7. 8.
결재일자	2026. 7. 8.
공개구분	비공개(5,6)

주무관	보육지원팀장	아동복지과장	주민복지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최정선	서정란	김충회	안명옥	최동규	전문학
협 조 자	기획예산과장 이경 조직평가팀장 성지은 예산팀장 강재형				

-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-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

추진개요

- (위탁시설)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
- (위탁기간) 개원일로부터 5년
- (운 영 체) 기존 운영자
- (위탁범위)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
- (소요예산) 연 1,330,197천원(예산) / 보육료, 인건비 등



주 민 복 지 국
아동복지과 / 보육지원

-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-

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

- ❖ 2026년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어린이집 대상으로 선정된 민들레와강아지똥·별그림·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을 기존 운영자에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I 추진 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)
- 「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」 제16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) 및 제17조(운영관리)
- 「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) 및 제6조(의회 동의)
-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-9224호(2026. 6. 12.)
“2026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심의결과 통보”

II 어린이집 일반 현황

-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

(단위: 개소 / 2026. 6월말)

구 분	계	동 구	중 구	서 구	유성구	대덕구
어린이집 수	788	106	97	254	246	85
국공립 수	182	40	35	41	38	28
비율 (%)	23	37.7	36	16.1	15.4	32.9

- 우리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

(단위: 개소 / 2026. 6월말)

구분	계	2019년 이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추진실적	41	10	1	3	5	9	3	3	7
비고	신규20 전환21	신규10	신규1	신규1 전환2	신규1 전환4	신규3 전환6	전환3	전환3	신규4 전환3

Ⅲ 대상 어린이집 현황

연번	어린이집명	소재지	대표 및 원장	정원/현원	연면적	비고
1	민들레와강아지똥	관저동로90번길 47, 1111동 104호 (관저동, 느리울마을1단지)	장혜진	20명/19명	84.9㎡	가정→ 국공립
2	별 그 림	둔산남로 30, 105동 108호 (둔산동, 녹원아파트)	홍도현	20명/13명	84.6㎡	
3	연 두 아 이 누 리	계룡로686번길 18, 102동 103호 (용문동, 라베리아아파트1단지)	오은하	20명/18명	84.9㎡	

Ⅳ 추진사항 및 일정

구분	추진내용	추진일정	비고
사업 대상 선정	○ 서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 －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심사	2026. 4. 29.	
	○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수요조사 결과 제출	2026. 4. 29.	
	○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최종 선정	2026. 6. 12	교육부
사전 절차 이행	○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수립	2026. 7.	
	○ 서구의회 민간위탁 동의	2026. 7.	예정
	○ 어린이집 건물 무상사용 계약 체결 및 전세권 설정	2026. 8.	예정
	○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위·수탁 계약 체결	2026. 10.	예정
시설 공사	○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○ 기자재(교구, 집기 등) 구입	2026. 9. ~ 2026. 10.	예정
개원	○ 기존 인가 어린이집 폐지 및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등록·개원	2026. 11.	예정

○ 설치예산 지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				재원비율	비고
	계	국비	시비	구비		
합계	480,000	240,000	165,000	75,000	—	
장기임차 보증금	300,000	150,000	105,000	45,000	국비50%, 시비35% 구비15%	개소당 100,000천원
리모델링비	150,000	75,000	52,500	22,500		개소당 50,000천원
기자재비	30,000	15,000	7,500	7,500	국비50% 시비25% 구비25%	개소당 10,000천원

※ 2026년 본예산 1개소 예산 기 반영, 2개소 추가 반영 필요(구비 추가소요 50,000천원)

V 민간위탁 개요

1 위탁개요

위탁대상	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	별그림어린이집	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
위탁기간	2026. 11. 1. ~ 2031. 10. 31.(5년)		
위탁업무	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		
위탁근거	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2호		
위탁체	장혜진	홍도현	오은하
현원/정원	19명/20명	13명/20명	18명/20명
교직원	9명 (원장1, 보육교사7, 조리원1)	5명 (원장1, 보육교사3, 조리원1)	8명 (원장1, 보육교사6, 조리원1)
운영비	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		

2] 소요예산(예산액)

○ 세입예산액: 1,330,197천 원(국 528,064천원, 시 273,136천원, 구 109,255천원, 보육료 등 419,742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	
	산출기초(원)	예산액
계		414,664
보육료	0세: 584,000원×4명×12월=28,032,000원 1세: 515,000원×10명×12월=61,800,000원 2세: 426,000원×6명×12월=30,672,000원 야간연장: 4,000원×3명×12월×40시간=5,760,000원	126,264
수익자 부담수입	특별활동비: 24,000원×16명×12월=4,608,000원 기타필요경비: 5,050,000원	9,658
보조금 및 지원금	원장: 3,838,400원×1명×12월×80%=36,848,640원 보육교사: 2,480,820×5명×12월×80%≐119,079,480원 보조교사: 1,139,000원×2명×12월=27,336,000원 조리사: 2,231,100원×1명×12월=26,773,200원 대체교사지원: 99,880원×20회=1,997,600원 아침돌봄수당: 14,008원×20일×12월=3,361,920원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: 35,505,790원 반별운영비: 150,000원×5반×12월=9,000,000원 연장보육료: 15,360,000원 급간식비: 2,500,000원 냉난방비: 570,000원 도서구입비: 130,000원 잡수입: 280,000원	278,742 (국비58% 시비30% 구비12%)

구 분	별그림어린이집	
	산출기초(원)	예산액
계		429,657
보육료	0세: 584,000원×8명×12월=56,064,000원 1세: 515,000원×5명×12월=30,900,000원 2세: 426,000원×7명×12월=35,784,000원	122,748
수익자 부담수입	특별활동비 - 60,000원×10명×12월=7,200,000원 - 60,000원×2명×8월=960,000원 기타필요경비: 8,260,000원	16,420
보조금 및 지원금	원장: 3,514,900원×1명×12월×80%=33,743,040원 보육교사: 2,494,250×6명×12월×80%=143,668,800원 보조교사: 1,139,000원×2명×12월=27,336,000원 조리사: 2,241,900원×1명×12월=26,902,800원 아침돌봄수당: 14,008원×20일×6월=1,680,960원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: 39,592,580원 반별운영비: 150,000원×6반×12월=10,800,000원 연장보육료: 2,160,000원 급간식비: 2,500,000원 교재교구비: 1,000,000원 냉난방비: 570,000원 도서구입비: 130,000원 잡수입: 405,000원	290,489 (국비58% 시비30% 구비12%)

구 분	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	
	산출기초(원)	예산액
계		485,876
보육료	0세: 584,000원×6명×12월=42,048,000원 1세: 515,000원×6명×12월=37,080,000원 2세: 426,000원×8명×12월=40,896,000원 야간연장: 4,000원×3명×12월×30시간=4,320,000원	124,344
수익자 부담수입	특별활동비: 39,000원×16명×12월=7,488,000원 기타필요경비: 12,820,000원	20,308
보조금 및 지원금	원장: 3,853,275원×1명×12월×80%=36,991,440원 보육교사: 2,716,720원×5명×12월×80%≒130,402,560원 비담임교사: 2,446,000원×1명×12월=29,352,000원 0세전용교사: 2,791,770원×1명×12월=33,501,240원 보조교사: 1,139,000원×2명×12월=27,336,000원 조리사: 2,231,000원×1명×12월=26,773,200원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: 37,677,867원 반별운영비: 150,000원×4반×12월=7,200,000원 연장보육료: 6,480,000원 0세전용 지원금: 1,200,000원 급간식비: 2,400,000원 교재교구비: 1,000,000원 냉난방비: 570,000원 도서구입비: 130,000원 잡수입: 210,000원	341,224 (국비58% 시비30% 구비12%)

○ 세출예상액: 1,330,197천 원(국 528,064천원, 시 273,136천원, 구 109,255천원, 기관부담 419,742천원)

(단위 : 천 원)

구 분	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	
	산출기초(원)	예산액
계		414,664
인건비	원장인건비:3,838,400원×1명×12월=46,060,800원 보육교사: 2,480,820원×5명×12월=148,849,700원 보조교사: 1,139,000원×2명×12월=27,336,000원 조리사: 2,231,100원×1명×12월=26,773,200원 대체교사지원: 99,880원×20회=1,997,600원 수당(명절수당,휴가수당, 스승의날수당 등): 12,182,000원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: 49,315,000원	312,514
운영비	수용비 및 수수료: 17,004,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: 8,900,000원 여비: 150,000원 복리후생비: 3,640,000원 업무추진비: 5,960,000원	35,654
보육활동비	교직원 연수,연구비: 1,800,000원 교재교구비: 11,160,000원 행사비(졸업 및 수료, 오리엔테이션, 기타행사 등): 9,100,000원 영유아 복리비: 안전관리 30,000원×20명×1회=600,000원 영아급간식비: 3,200원×20명×250일=16,000,000원 교직원급간식비: 3,200원×9명×250일=7,200,000원	45,860
수익자 부담경비	특별활동비: 24,000원×16명×12월=4,608,000원 기타필요경비: 5,050,000원	9,658
재산조성비	시설비(개보수 등): 5,800,000원 자산취득비: 3,500,000원	9,300
예비비	예비비: 1,678,000원	1,678

구 분	별그림어린이집	
	산출기초(원)	예산액
계		429,657
인건비	원장인건비: 3,514,900원×1명×12월=42,178,800원 보육교사: 2,494,250×6명×12월=179,586,000원 보조교사: 1,139,000원×2명×12월=27,336,000원 조리사: 2,241,900원×1명×12월=26,902,800원 수당(명절수당,휴가수당, 스승의날수당 등): 15,703,080원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: 55,704,513원	347,411
운영비	수용비 및 수수료: 7,563,2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: 4,872,000원 여비: 25,000원 복리후생비: 3,500,000원 업무추진비: 10,100,000원	26,060
보육활동비	교직원 연수,연구비: 1,083,000원 교재교구비: 7,130,000원 행사비(졸업 및 수료, 오리엔테이션, 기타행사 등): 5,250,000원 영아급간식비: 3,000원×20명×250일=15,000,000원 교직원급간식비: 3,000원×10명×250일=7,500,000원	35,963
수익자 부담경비	특별활동비 - 60,000원×10명×12월=7,200,000원 - 60,000원×2명×8월=960,000원 기타필요경비: 8,260,000원	16,420
재산조성비	시설비(개보수 등): 1,000,000원 자산취득비: 1,500,000원	2,500
예비비	예비비: 1,303,000원	1,303

구 분	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	
	산출기초(원)	예산액
계		485,876
인건비	원장: 3,853,275원×1명×12월=46,239,300원 보육교사: 2,716,720원×5명×12월=163,003,200원 0세전용교사: 2,791,770원×1명×12월=33,501,240원 비담임교사: 2,446,000원×1명×12월=29,352,000원 보조교사: 1,139,000원×2명×12월=27,336,000원 조리사: 2,231,000원×1명×12월=26,773,200원 수당(명절수당, 휴가수당, 스승의날수당 등): 14,400,000원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: 64,665,075원	405,270
운영비	수용비 및 수수료: 6,348,4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: 4,510,000원 여비: 60,000원 복리후생비: 3,210,000원 업무추진비: 8,110,000원	22,238
보육활동비	교직원 연수, 연구비: 2,172,000원 교재교구비: 8,320,000원 행사비(졸업 및 수료, 오리엔테이션, 기타행사 등): 3,200,000원 영유아 복리비: 심리검사 10,000원×20명×1회=200,000원 영아급간식비: 2,800원×20명×21일×12개월=14,112,000원 교직원급간식비: 2,800원×10명×21일×12개월=7,056,000원	35,060
수익자 부담경비	특별활동비: 39,000원×16명×12월=7,488,000원 기타필요경비: 12,820,000원	20,308
재산조성비	시설비(개보수 등): 1,500,000원 자산취득비: 1,000,000원	2,500
예비비	예비비: 500,000원	500

VI 향후계획

- 2026. 7.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
- 2026. 8. 어린이집건물 무상사용계약 및 전세권 설정
- 2026. 9. ~ 10.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
- 2026. 10. 국공립어린이집 위·수탁계약
- 2026. 11. 기존 민간어린이집 폐지 및 국공립어린이집 개원

- 붙임 1. 관련 법령 1부.
2. 민간위탁 동의안 각 1부. 끝.

영유아보육법

[시행 2026. 5. 19.] [법률 제21657호, 2026. 5. 19., 일부개정]

교육부 (영유아정책총괄과), 044-203-7228

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(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1. 6. 7., 2013. 8. 13., 2017. 3. 14., 2018. 12. 24., 2023. 8. 16.>

1.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
2. 삭제 <2018. 12. 24.>
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8. 12. 24.>
-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8. 12. 24., 2020. 12. 29.>
-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 12. 24.>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[제목개정 2011. 6. 7.]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, 2023. 12. 26.>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 <개정 2008. 1. 17., 2011. 6. 7., 2011. 8. 4., 2018. 12. 11., 2020. 12. 29., 2023. 12. 26.>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-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6. 7.>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, 2011. 8. 4., 2023. 12. 26.>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[제목개정 2011. 6. 7.]
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[시행 2026. 5. 12.] [교육부령 제382호, 2026. 5. 8., 일부개정]

교육부 (영유아정책총괄과), 044-203-7228

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 ①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1. 12. 8., 2024. 6. 27.>

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1. 12. 8., 2024. 6. 27.>

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)
3.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4.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5. 어린이집 운영계획서(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)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9. 1., 2024. 6. 27.>

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1. 12. 8., 2024. 6. 27.>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. <신설 2010. 7. 9., 2012. 8. 3.>

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0. 7. 9., 2011. 12. 8.>

⑦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0. 7. 9., 2011. 12. 8., 2022. 6. 22., 2024. 6. 27.>

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,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0. 7. 9., 2011. 12. 8., 2024. 6. 27.>

1. 변경 사유서
 2.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고,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0. 7. 9., 2011. 12. 8., 2024. 6. 27.>

[전문개정 2009. 7. 3.]

[제목개정 2011. 12. 8.]

제24조의2(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)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.

[본조신설 2012. 2. 3.]

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

[시행 2025. 4. 9.] [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194호, 2025. 4. 9., 일부개정]

대전광역시 서구(아동복지과), 042-288-3230

제16조(공립어린이집의 설치) ①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12.23. 2018.10.8.>

1.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
2.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
3. 산업단지 지역

②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12.23>

[제목개정 2013.12.23]

[종전 제11조에서 이동 <2021.7.30.>]

제17조(운영관리) ① 공립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3.12.23., 2021.7.30.>

②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 이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<본조 전문개정 2009.6.26 제990호>

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이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했을 때
2.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3.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
[종전 제12조에서 이동 <2021.7.30.>]

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 1. 1.] [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059호, 2023. 12. 28., 전부개정]

대전광역시 서구(기획조정실), 042-288-2340

제4조(위탁 대상사무)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(그 장을 포함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

제5조(위탁 적정성 검토)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그 밖에 공공·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의회 동의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(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보조 받는 사무로서 그로부터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
 2.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는 사무로서 수탁기관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
 3.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
 4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
 5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
 6. 재난·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사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